

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05. 8. 5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토록 위임된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 - 1차 위반 : 30만원, - 2차 위반 : 70만원, - 3차 위반 : 200만원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2) 입법예고(2005. 6. 18 ~ 7. 8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

제1조 및 별표 1·별지 제4호서식·별지 제7호서식중 “국민건강증진법”을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부과대상란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30	70	200
---	----	----	-----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“행정절차법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 1]

과태료부과기준

현행					개정안				
근거법령	부과대상	부과금액(만원)			근거법령	부과대상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국민건강증진법제34조	1. (생략)				국민건강증진법제34조	1. (현행과 같음)			
	2. <신설>					2.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30	70	200
	3. (생략)				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			
	4. (생략)				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		
					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			

(이하 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민건강증진법

第34條 (過怠料)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신설 2002.1.19, 2003.7.29>

1.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
第35條 (過怠料의 賦課·徵收節次)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1997.12.13>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第33條 [과태료부과]

①법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 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,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자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.